

부산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2나474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교훈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30.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0가단327085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8,140,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한 후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 1) 부산신용보증재단은 2017. 7. 24. 회생채무자 A(이하 'A'이라 한다)이 C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위 대출금채무 전부에 관하여 신용보증하면서 A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A은 C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이행을 2019. 11. 4.부터 연체하였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6. 16. C은행에게 A의 대출금채무 잔액 27,958,8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3) 부산신용보증재단은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25,8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44,252원을 회수하여 미회수 법적절차비용은 181,548원이다.
- 4) 그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재단은 A에 대하여 구상금 및 미회수 법적절차비용합계 28,140,428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나. 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A은 2019. 10. 21. 피고와의 사이에서, A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은 2019.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소송절차의 수계

1) 부산신용보증재단은 2020. 7. 10. 피고 및 A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2. 3. 17. 제1심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3. 31.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9. 28. 부산지방법원 2022개회114745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법원은 A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인 A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결정하였다.

3) 부산신용보증재단은 2023. 2. 27.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A이 부산신용보증재단을 수계한다는 내용의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5. 12. 피고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를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변경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인권의 성립 여부

가. 부인의 대상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포함하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부인권 성립의 전제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위 부인권 성립을 위한 전제로서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위 계약 체결 이전인 2017. 7. 24. 이미 이 사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②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약 15일이 지난 2019. 11. 4.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인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리금 이행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5조에 따른 사전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다.

③ 그 후 부산신용보증재단은 2020. 6. 16. C은행에게 A의 대출금채무 잔액 27,958,8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나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 부산광역시 남구청과 수영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3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관련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1억 9,300만 원, G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3,000만 원,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7,290만 원, I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 19,999,000원, 2,000만 원, C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278,000원, J에 대한 대출금채무 8,876,000원 등 합계 348,053,000원 가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 A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점에 비추어 보면,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8. 1.경부터 2019. 2.경까지 A에게 합계 7,29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차에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의 대여금 7,290만 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피고가 A의 채무 2억 3,000만 원 가량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을 시세대로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A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A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처분계약이었던 점, ② 피고가 A에게 대여한 7,290만 원에 대하여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 ③ 피고 스스로도 A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반복할 만한 선의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3.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 또한 인정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인권 행사의 효력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므로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보아야 한다.

나.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범위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0. F 명의로 전세금 6,500만 원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0. 1. 3.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② A은 2018. 1. 2. G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③ 피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인 2019. 11. 11. G 주식회사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출 원리금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④ 그 후 피고는 2020.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K조합에게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⑤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한 2023. 5. 1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억 원으로 추인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에는 전세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사해행위 이후에는 새로이 K조합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2023. 5. 12. 기준2)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전세권의 전세금 6,500만 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액인 3,000만 원을 공제한 2억 5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3억 원 - 말소된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 6,500만 원 -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다만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8,140,428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28,140,4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를 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한혜진, 판사 전유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부산 수영구 대 121.8㎡

2. 부산 수영구

[도로명 주소]

부산 수영구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지하 63.00㎡ 1층 71.80㎡ 2층 63.11㎡

3. 부산 수영구 도로 18.7㎡, 끝.

1) 원고는 2023. 5. 12.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청구취지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회생채무자 A과 피고 사이에 2019. 10. 21. 체결된 매매계약은 28,140,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8,140,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부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는 취하되었으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하기로 한다.

2)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한 날이다.